

의안번호	2214289
의 퇴 인	김도읍의원
회 답 일	2026. 2. 10.
추계번호	25B6255

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정보보호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0억 7,500만원(연평균 2억 1,500만원)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75	—	—	—	—	75	15
정보보호교육 실태조사 실시 (안 제7조)	200	200	200	200	200	1,000	200
합 계	275	200	200	200	200	1,075	215

주: 1.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, 실태조사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기간 동안 실태조사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1. 정보보호 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. 정보보호 교육의 추진 내용 3. 정보보호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4.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 5.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6.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 7. 그 밖에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6조(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의 수립)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7조(실태조사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정보보호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·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8조(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1. 정보보호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2. 정보보호 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 3.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의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지원 4. 그 밖에 정보보호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5	안 제9조(학교 등에서의 정보보호 교육)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1. 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. 학교 정보보호 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학교 정보보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10조(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교육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1조(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연구·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8	안 제12조(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1.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·장기 수급 전망 수립 2.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. 정보보호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4.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의 지원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9	안 제13조(정보보호 전문인력 개발원)	정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개발원을 설립함(제1항) 정보보호 전문인력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(제3항) 1.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2. 정보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3. 정보보호 전문인력 훈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·보급 및 관리 4. 정보보호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. 국내외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련 정보·자료 수집·분석,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6.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.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 관련 사업	의무규정
10	안 제14조(자격제도)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	
1	안 제5조(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	○	•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									
2	안 제6조(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의 수립)	—	• 미대상 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은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인력 및 예산으로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									
3	안 제7조(실태조사)	○	•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									
4	안 제8조(정보보호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정보보호 교육,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 중으로, 제정안에 따라 신규사업이 실시되거나 기존사업의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신규사업 실시 및 기존사업 확대 여부, 사업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개요</th><th>예산('26)</th></tr><tr><td>디지털역량 강화교육</td><td>— 정보보호 교육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, 노령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제공 등</td><td>14,102</td></tr><tr><td>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</td><td>— 대학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다양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보보호 인력양성 — 중·단기 집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ICT·정보보호 분야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— 중·고교생, 청소년 대상 정보보호 잠재인력 발굴·교육 등 지원 — 전국 지자체, 공공기관, 정보보호기업과의 연계로 수요 기반 교육을 추진 등</td><td>23,655</td></tr></table>	사업명	사업개요	예산('26)	디지털역량 강화교육	— 정보보호 교육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, 노령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제공 등	14,102	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	— 대학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다양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보보호 인력양성 — 중·단기 집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ICT·정보보호 분야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— 중·고교생, 청소년 대상 정보보호 잠재인력 발굴·교육 등 지원 — 전국 지자체, 공공기관, 정보보호기업과의 연계로 수요 기반 교육을 추진 등	23,655
사업명	사업개요		예산('26)									
디지털역량 강화교육	— 정보보호 교육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, 노령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제공 등		14,102									
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	— 대학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다양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보보호 인력양성 — 중·단기 집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ICT·정보보호 분야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— 중·고교생, 청소년 대상 정보보호 잠재인력 발굴·교육 등 지원 — 전국 지자체, 공공기관, 정보보호기업과의 연계로 수요 기반 교육을 추진 등	23,655										
5	안 제9조(학교 등에서의 정보보호 교육)											
6	안 제10조(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교육)			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				
7	안 제11조(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)		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개요</th><th>예산('26)</th></tr><tr><td>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</td><td>-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,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, 지역 내 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</td><td>24,606</td></tr><tr><td>교육정보 보호</td><td>- 교육기관 정보보호교육센터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</td><td>12,214</td></tr><tr><td>개인정보 교육 지원</td><td>- 아동청소년, 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, 공공·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등</td><td>1,284</td></tr></table>	사업명	사업개요	예산('26)	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	-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,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, 지역 내 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	24,606	교육정보 보호	- 교육기관 정보보호교육센터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	12,214	개인정보 교육 지원	- 아동청소년, 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, 공공·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등	1,284
사업명	사업개요	예산('26)													
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	-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,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, 지역 내 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	24,606													
교육정보 보호	- 교육기관 정보보호교육센터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	12,214													
개인정보 교육 지원	- 아동청소년, 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, 공공·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등	1,284													
8	안 제12조(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)		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교육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※ [참고자료] '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 현황' 참조 - 참고로,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 ¹⁾ 에서도 정보보호 교육,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												
9	안 제13조(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할 경우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의 조직 및 인력 규모, 건립 위치 및 방식, 수행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,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(KISIA), 한국정보기술연구원(KITRI) 등의 기관에서도 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 각 기관별로 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 사업 담당 인원(해당 기관 직제 기준, KISA 16명, KISIA 22명, KITRI 13명)을 두고 있음												
10	안 제14조(자격제도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경우 제도 운영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자격의 종류 및 요건, 자격 심사·부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												

자료: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제정안에 따른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비용은 특정분야 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
○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제정안에 따라 5년마다 실시

1)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)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4.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

제15조(전문인력 양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·장기 수급 전망 수립
2.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, 설립·지원
3.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
4.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
5.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·육성 사업과 학점 이수 인턴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.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이용자의 보호시책 등) ① 정부는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이용자에 대한 정보보호산업 정보 제공 및 교육
2.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3조(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)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·홍보
2.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·단체의 육성 및 지원

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유사사례로, 교육부는 「과학·수학·정보·융합교육 종합계획」을,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「환경교육종합계획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,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

[표 2] 유사 사례의 주요 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소관부처	사례명	실시주기	예산
교육부	「과학·수학·정보·융합교육 종합계획」 기초연구	5년	70 (2023년)
기후에너지 환경부	「제4차 환경교육종합계획」 수립 연구	5년	80 (2024년)
평 균			75

자료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내용 참조

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,500만원(연평균 1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정보보호교육 기본계획 수립	75	—	—	—	—	75	15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정보보호교육 실태조사 실시(안 제7조)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정보보호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·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(이하 “정보보호교육 실태조사”)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정보보호교육 실태조사는 ‘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·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기관’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조사 대상이 유사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‘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학교환경교육 현황조사’를 참고하여 추계함

[표 4] 유사 사례의 주요 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소관부처	사례명	조사 대상	실시주기	예산
기후에너지 환경부	2025년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학교환경교육 현황조사	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, 광역시·기초지방자치단체, 사회환경교육기관, 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등	매년	200 (2025년)

자료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내용 참조

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0억원(연평균 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정보보호교육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정보보호교육 실태조사 실시	200	200	200	200	200	1,000	200

주: 1.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실태조사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기간 동안 실태조사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, 실태조사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정보보호 교육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소관부처	사업명	사업 내용	예산('26)
과학기술 정보통신부	디지털역량 강화교육	○ 디지털역량함양지원 - (목적)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AI·디지털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AI·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AI·디지털 보편교육 추진 - (주요내용) 디지털 배움터 및 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, 장애인 집합·방문 정보화교육, AI디지털배움터 구축, 웹 기반 AI 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, AI 기초역량 콘텐츠 개발·보급 등	14,102
	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	○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운영 - (목적) 대학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다양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보보호 인력양성 - (주요내용)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·전공 등 운영에 필요한 전문 실습장 구축, 커리큘럼 개발 및 산학협력 등 지원 ○ 사이버보안인력양성 - (목적)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및 교육·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공공·민간의 사이버 실전 대응역량 강화 및 최정예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 - (주요내용) 실제 침해사고 사례 기반의 실전형 사이버훈련장(Security-Gym) 운영, K-Shield 주니어, AI보안관제 전환 교육 등 전문교육·훈련과정 운영 ○ 융합보안인력양성 - (목적) ICT융합으로 지능화·고도화되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여 융합보안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- (주요내용) ICT융합산업보안, 신기술융합보안, 온택트 융합보안 등 융합보안 교육과정 운영 및 융합보안 전문인력 양성 ○ 차세대보안리더양성 - (목적) 정보보호 분야 잠재력을 보유한 청년층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가의 교육 및 멘토링 제공을 통해 중·고급 화이트해커 양성 - (주요내용) 차세대보안리더양성(BoB), 화이트햇스쿨 운영 및 교육과정 제공 ○ S-개발자 - (목적) 최정예 보안제품 개발자 양성을 위하여 보안전문 문화 교육 및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최고급 수준의 정보보호 인재 육성 - (주요내용) 우수 보안 SW개발인력 선발, 보안전문화 교육 및 개발실무 프로젝트 등	23,655

소관부처	사업명	사업 내용	예산('26)
		○ 시큐리티아카데미 - (목적) 기업이 인재선발, 교육설계 및 운영, 취업 성과정을 주도하여 적시에 현장 투입이 가능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- (주요내용) 정보보호 분야 구직을 희망하는 대학졸업자 및 미취업자 대상으로 전문교육(3개월), 프로젝트(7주), 현장실습(2~3개월)으로 구성된 실무형 교육 및 취업 지원 ○ 정보보호인력양성기반구축 - (목적) 중·고교생, 청소년 대상 정보보호 잠재인력 발굴·교육 및 진로 설정 등 지원 - (주요내용) 대학정보보호동아리연합회 지원,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개최, 사이버가디언즈 활동지원 등	
	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	○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- (목적)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,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정보보호 기반 강화 - (주요내용)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,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, 지역 내 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	24,606
교육부	교육정보 보호	○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- (목적) 교육기관 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및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- (주요내용) 교육기관 정보보호교육센터 교육 콘텐츠 개발,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를 통한 정보보안 및 정보화업무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등	12,214
개인정보 보호위원회	개인정보 교육 지원	○ 개인정보보호 교육 - (목적) 아동·청소년, 디지털 취약계층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공공·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- (주요내용) 초·중고, 어르신 등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온·오프라인 교육교재 개발, 공공·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온·오프라인 교육교재 개발 등 ○ 전문인력 양성 - (목적) 가명·익명처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, 조직의 개인정보를 총괄·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업무수행 전문성 강화 - (주요내용) 가명처리 전문인재 교육 콘텐츠 개선 및 교육 운영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양성 교육 운영 등	1,284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교육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(II-1)